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0-62호

2020년도 상반기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당진시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4월 7일 당진시장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(지원목적)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

(지원규모) 50개 업체 내외

- (지원대상) 당진시내 사업장과 거주지가 있고 공고일 기준 동일 업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상 2019, 10, 7.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)
 - ☞ 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수 기준) (광업.제조업.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(도소매업.음식점업.숙박업 및 서비스업) 상시 근로자 5인 미만

(지원제외대상)

- ☞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(기업)
- ☞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자(기업)
- 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☞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☞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☞ 최근 3년간 당진시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 하였던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
- 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- ☞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

(가점사항)

- ☞ 직전 연매출 4,800만원 이하 영세업체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_홈텍스, 세무서)
- ☞ 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
- ☞ 제로페이 가맹점
- ☞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(2019년 1~2월매출 대비 2020년 매출 30%↑ 감소)

2. 지원내용

(지원금액)

- 점포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, 업체당 최대 500만원)
- 공급가액 10%이상, 부가세 본인부담
- 역량강화교육 수료시 지워가능

(지원분야) 경영환경개선 지원

- ☞ 내·외부 인테리어(간판, 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전기조명공사, 식당 주방 환경개선 등)
- ☞ 제품 진열대, 전시대, 수납대 등
- ☞ CCTV 설치, POS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
- ☞ 영업에 직접 연관된 비품 등
- ※ 개인소유 가능 물품(PC, 노트북, 에어컨 등) 구매 제외

3. 신청·접수

(신청기간) 2020. 4. 7.(화) ~ 30.(목) 18:00까지

※ 우편 및 방문접수 4. 29.(수) 18:00까지

(제출서류)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cepa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구분	제출자료 목록
필수	①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 [서식 1]
	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.[서식 2]
	③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1부.
	(상시 근로자 가 있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	(상시 근로자 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	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.
	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 (발급처: 시·구청, 주민센터, 정부24)
	⑥ 매출증명서류(2019년 필수) 1부. (발급처: 세무서, 국세청홈페이지)
	우대사항(가산점) 확인서류
추가 선택	① 직전 연매출 4,800만원 미만 사업자 :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(세무서, 홈텍스)
	②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
	③ 제로페이 가맹점
	④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: 코로나 피해 매출증명서류

(접수방법) 이메일, 우편 및 방문접수

- 이메일 접수: yoonjh1779@cepa.or.kr(파일명: 업체명_대표자명)
 - ※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
 - ※ 파일명 예시: 경제진흥원_홍길동
- 우편접수: (31450)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01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
- 방문접수: 충청남도경제진흥원 401호(기업육성팀)

4. 추진일정

공고	및	신경	청시	ተ የ	접수	
신청서	및	제	출시	d류	. 접	수
2020	. 4.	7.	~	4.	30.	

현장점검
신청업체 방문점검
2020. 5. 4. ~ 5. 15.

선정평가위원회
대면평가
2020. 5. 20. ~ 5. 21.

과제수행	및	지	원듣	}	지
과 완료!	데수 보고	_		출	
2020	0. 6	. 1	5.	~	

역량강화교육
매주 화, 목 반복교육 교육 수료 필수
2020. 6. 2. ~ 6. 11.

선정결과발표
개별 통보
2020. 5. 27.

※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(유의사항)

- 모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입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에는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
-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
- 선정된 지원사항의 내용 변경 및 수행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변 경승인 요청서 제출[서식6]
- 지원사업 포기의 경우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제출[서식7]
 (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)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세부운영 관리기준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(문의처)

- 충청남도경제진흥원(기업육성팀) : ☎ 041-539-4544
- 충청남도 보부상콜센터 : ☎ 041-424-4000
-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cepa.or.kr

【별첨 1】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ᆏᄀᄜᅕᅅᄃ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120국년 이의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임업 및 어업	А	
19. 광업	В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평균매출액등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80억원 이하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 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3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1	
41. 교육 서비스업	P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1. 교육 시미그립 P 10억원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		10억원 이하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<비고>	, 3	

 ^{&#}x27;미고'
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【별첨 2】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5102	여관업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68	부동산업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